

	<h1>설 명 자 료</h1>	배 포	2019.3.18(월)
		담 당 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22)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043-719-3241)
		과 장	윤분도 (☎044-200-5610) 이상도 (☎043-719-3240) 이상윤 (☎044-200-5622)
		사 무 관	김성희 (☎043-719-3241)

해당 양식장 전면 출하정지 및 전국 양식장 실태조사 실시

[MBC 2019.3.17.자 보도에 대한 설명]

- 2019년 3월 17일 MBC에 보도된 『뱀장어 양식장 공업용 포르말린...전국 유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내용

- 전북 고창 소재 뱀장어 양식장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포르말린을 양식장 물탱크 청소용으로 사용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

-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한 양식장에 대해 전면 출하를 정지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된 뱀장어에 대해 유통을 금지하고 음식점 등으로 출하된 물량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를 통해 회수 등 조치 중에 있습니다.

*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해당 양식장 뱀장어 유통·판매 중단 조치(3.18)

- 또한, 정부는 전국 뱀장어 양식장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 여부를 우선 점검하고, 3.17일 전북 고창군 소재 1개 뱀장어 양식장에서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이 적발된 만큼

올해 5월에 실시 예정인 양식장 동물용의약품 사용실태 점검을 앞당겨 3.19일부터 실시하여 양식장의 의약품 오·남용을 철저히 관리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형사고발할 계획입니다.

- 한편, 양식장에서의 의약품 오·남용 및 불법 화학물질 사용 방지를 위해 매년 지자체와 합동으로 양식장 동물용의약품 사용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형사고발 등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업용 포르말린 등 불법약품 사용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